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 15 집



언론중재위원회

제15집을 발간하며 ……

우리 언론은 헌법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라는 지고의 가치를 부여받은 이래 오늘날까지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그에 따른 비판과 시비를 가리는 공리적(公器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언론은 정보전달, 사회감시, 의제설정 등과 같은 주된 기능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다양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무엇보다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의 특성인 속보성, 선정성, 강력한 전파력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으며 갈수록 보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모두 소중한 헌법적 가치이자 기본권이므로 두 권리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두 가치의 충돌에 따른 분쟁과 관련해 우리 법원은 진실상당성의 법리, 익명보도의 원칙, 위법성의 조각사유 등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확립하는 등 그 동안 언론소송 판례를 많이 발전시켜왔습니다.

법원 소송단계 이전에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준사법기관인 우리 위원회는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매년 언론관련 주요 판결을 수집해 ‘국내언론 관계판결집’을 제작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2007년 각급 법원이 내린 언론관련 판결 가운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판결(반론보도청구 4건, 정정보도청구 7건, 손해배상청구 35건, 기타 3건 등) 49건을 선정하여 제15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집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에 대한 법리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는 물론, 일반 국민들과, 언론인, 언론법제 연구자 등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8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의본부

차례

I. 반론보도청구사례

1.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못한다
진○○ 대 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카기1937, 서울고등법원 2005나100290) (확정) 13
2. 반론제도가 반론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여○○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1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112566) (확정) 20
3. 타 프로그램을 인용 방송했다 하더라도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인터뷰를 거절한 사실이 반론보도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김○○ 외 1인 대 기독교○○○○회 ○○교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1833) 31

II. 정정보도청구사례

1.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같은 이유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관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이○○ 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2371) (확정) 40
2.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임종인 대 주식회사 와이티엔 외 1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106066) (확정)	52
3.	개인이 어떤 단체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개인이 속한 단체가 개별적 연관성을 당연히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대통령 비서실 대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0655) (확정) 대통령 비서실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0662) (확정)	55
4.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 라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8182) (확정)	62
5.	피고 언론사가 원보도에 대한 원고의 해명보도를 해주었으나 정정보도에 준하는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다 건설교통부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3984) (확정)	69
6.	원고가 비만 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하라 우○○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9017)	75

Ⅲ. 손해배상청구사례

1.	보도 내용과 관계없는 주유소의 전경을 방영하여 실제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다는 인상을 주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 외 1인 대 주식회사 광주방송 외 1인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892) (확정)	87
2.	피고 방송사는 원고가 익명성 보장을 조건으로 하여 인터뷰를 허락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p>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음성을 변조하지 않아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p> <p>김○○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9577) (확정) 96</p>
3.	<p>포털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을 진다</p> <p>김○○ 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4571) 103</p>
4.	<p>피의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동종전과도 아닌 범죄경력을 보도한 경우 공공성이 부정된다</p> <p>주○○ 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6인 (대법원 2004다61372) 124</p>
5.	<p>국회의원 욕설 보도는 공적 인물의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다</p> <p>주성영 대 오연호 외 6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8321) 129</p>
6.	<p>마치 원고가 예정된 피해현장시찰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p> <p>이해찬 대 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882) 145</p>
7.	<p>경찰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가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내부문서를 기초로 하여 기사의 제목을 “내연녀”로 표현한 기사의 작성행위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p> <p>황△△ 대 대한민국 외 4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8420) (확정) 149</p>
8.	<p>허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으며, 특히 현재 생존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논픽션의 성격을 가진 드라마의 경우에는 픽션드라마보다 명예훼손 책임이 가중된다</p> <p>박○○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6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9818) (확정) 157</p>
9.	<p>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언론출판보다</p>

-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므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김○○ 대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 외 1인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449079,
대구지방법원 2006나11409, 대법원 2007다52744) 169
10. 원고의 대북접촉 사실이나 알리바이의 의문점 등의 사정만으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김○○ 외 3인 대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 (대법원 2005다55510) 182
11. 방송사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자 내지 방송의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김○○ 외 3인 대 한국방송공사 외 4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4302, 서울고등법원 2006나80294) (확정) 187
12.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프라이버시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였다
이○○ 대 주식회사 중앙엠엔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1497) (확정) 205
13. 기사 내용상 원고와 A의원이 동일인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A의원’이라는 집단표시 속에 원고가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김○○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4575) (확정) 211
14.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도 아닌,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만연히 신뢰한 나머지, 후속취재를 통해 로비의혹과
원고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여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대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3415) (확정) 216
15.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만평이 회화적이고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일뿐, 독자들에게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733) (확정)	221
16.	보도내용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권리보호에 관한 정신보건법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적시된 사실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어 위법성이 없다 박○○ 대 한국방송공사 외 1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7242, 대법원 2007다2268)	225
17.	사찰이 사생활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한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염○○ 외 1인 대 안동문화방송 주식회사 외 1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6가단4557) (확정)	236
18.	보도가 명예훼손적 사실을 일부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진실상당성이 있으므로 보도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대 설□□ 외 5인 (서울양지방법원 2007가합1826) (확정)	243
19.	평범한 정신과 의사는 공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범죄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 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야 할 정도로 보도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장○○ 대 주식회사 연합뉴스 외 4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6200, 대법원 2006다656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20029) (확정)	249
20.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그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명예훼손이 된 경우 사장은 보도 자료의 작성·배포에 대한 결재자 내지 승인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보도 자료를 작성한 자는 작성자로서 명예훼손 책임을 진다 조○○ 외 17인 대 정연주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55539, 서울고등법원 2006나103531)	261
21.	부당한 노무관리 행태를 고발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언론을 통하여 공개된	

- 사진이나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개된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케이티 노동조합 외 1인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3887) (확정) 277
22.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 등 신빙성 높은 취재자료에 따라
위 보도를 하였다거나 수사기관 이외에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별도의
보충취재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염동연 대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외 8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2100) (확정) 283
23. 언론기관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단순한 경과 보도에
한정하여 신중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박○○ 외 1인 대 주식회사 뉴시스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5157) (확정) 290
24. 기자회견의 개최사실 및 그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요구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의 보도는 진실성이 인정된다
박○○ 외 4인 대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 외 1인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79121, 대전지방법원 2007나9762) (확정) 298
25.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대 주식회사 경향닷컴 (창원지방법원 2007나7861) (확정)
이○○ 대 주식회사 스포츠서울미디어 (창원지방법원 2007나7878) (확정) 307
26. 보도에서 굳이 기재할 필요 없는 모욕적인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였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기사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주식회사 충청일보 외 3인 대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 외 4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9609) (확정) 319

IV. 기타사례

1.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은 그 기사의 허위성을 인식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817) 340

2. 피고인은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표현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등을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김○○ (전주지방법원 2006노195, 대법원 2006도3619) 348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